제299회 시의회 임시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2021. 03. 03.(수)



세계 최고의 소기업·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

# 정 관 변 경 보 고



### 정관 변경 보고

### │. 변경이유

- □ 「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 개정 (2020.12.31.) 에 따른 서울시의회 결산서 제출 기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  -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제출 기한 변경

「서울특별시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□ 市「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」(공기업담당관-2019.11.06.) 에 따라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  - 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정관에 기본재산(출연금) 목록 기재 의무화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정관) ① 출자・출연 기관의 <u>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출자・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
#### Ⅱ. 주요내용

## **1** 결산 제출 기한 변경 [제30조 제4항]

- □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제출 기한 변경 (제30조 제4항의 2)
  -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

## 2 기본재산 목록 기재 [별지]

- □ 재단 기본재산 목록 '별지' 개정
  - 회계법인 감사 및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 '2020년 결산재무제표' 상 기본재산 목록 기재

#### ※ '재무상태표'주석13(기본재산)

· 재단의 기본재산은 <u>재단 설립시의 서울특별시 출연금</u>과 <u>재단 설립 후 서울특별시</u> 및 국내 각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

<별지> 기본재산 목록

(단위: 천원)

구분	출연기관	금액(2020.12.31.기준)
설립시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
출연금	서울특별시	414,480,466
	대한민국정부	128,303,968
	자치구	27,800,000
	금융회사 등	651,605,452
	소 계	1,222,189,886
합 계		1,272,189,886

Ⅲ. **시행일**: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있은 날

【붙임】정관 변경 전·후 대비표 1부. 끝.

## 【붙임】

## <u>정관 변경 전·후 대비표</u>

현 행	변 경(안)	
정 관	정 관	
제1장 총 칙		
<b>제1조~제6조</b> (기재 생략)		
제2장 임 원 제7조~제14조 (기재 생략)		
제3장 이사회		
제3성 이자외 제15조~제21조 (기재 생략)	(현행과 같음)	
제4장 업 무 제22조~제27조의3 (기재 생략)		
제5장 회 계 제28조~제29조 (기재 생략)		
제30조(예산과 결산)	제30조(예산과 결산)	
①~③ (기재 생략)	①~③ (기재 생략)	
④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, 대차	④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, 대차	
대조표,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	대조표,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	
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가	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가	
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	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	
야 한다.	야 한다.	
1. 시장에는 2개월 이내	1. 시장에는 2개월 이내	
2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		
특별위원회에는 <u>3개월</u> 이내	특별위원회에는 <u>2개월 이내에 결산을</u>	
	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	
	하여 제출	

현 행	변 경(안)
제31조~제35조 (기재 생략)	

제6장 해 산

제36조~제37조 -- (기재 생략) --

부 칙(1~19) (기재 생략)

(현행과 같음)

#### 〈신 설〉

#### 부 칙(20)

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숭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〈별지〉기본재산 목록 〈신설 2020.05.26.〉

#### 〈**별지〉기본재산 목록** 〈개정 2021.00.00.〉

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19.12.31.기준)
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
출연금	서울특별시	333,515,466
	대한민국정부	118,135,008
	자치구	13,150,000
	금융회사 등	527,157,705
	소 계	991,958,179
합계		1,041,958,179

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0.12.31.기준)
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
출연금	서울특별시	414,480,466
	대한민국정부	128,303,968
	자치구	27,800,000
	금융회사 등	651,605,452
	소 계	1,222,189,886
합 계		1,272,189,886